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5.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13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2005. 7. 1)
제113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5. 7. 4)
제113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2005. 7.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가. 제안이유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04회계연도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2004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1,761만2천원이 포함된 2,441억5,864만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19억4,831만4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약 103.2%로 초과 수납은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733억4,276만1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2.2%로 전년도의 93.7%보다는 약 1.5% 감소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408억4,131만7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4억4,687만1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4.8%로 전년도의 86.1%보다는 징수율이 약 1.3% 감소되었는바 더욱더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3,632만3천원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3억9,992만1천원이 실제 수납액으로 전년도의 20% 보다는 징수율이 3% 정도 증가 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인 6억1,596만9천원과 대비하면 약 65%에 해당하는 수납액으로 매년 저조한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51억2,946만4천원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7억7,466만4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의 9.9%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대책이 요구됨.

○ 200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8,729만3천원이 포함된 435억9,752만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614억4,988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9.6%에 해당하는 427억7,085만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86억7,902만7천원 대비 84.3%에 해당하는 과년도 미수납액 157억5,473만6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435억9,752만9천원 중 약 62.6%에 해당하는 273억1,370만3천원은 지출되고, 상암1공영주차장 및 영리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15억9,330만2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3.7%에 해당하는 146억9,052만3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전년도의 66%보다는 약 32%가 감소되었음.

○ 2004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1,761만2천원이 포함된 2,441억5,864만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1.7%에 해당하는 1,995억4,842만3천원이 지출되고, 내고장탐방 사업위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등 11건이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6,209만6천원이 전용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 시설비에서 창전미리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인가 시기가 불명확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창전동청사 신축비 22억3,336만6천원과 지역경제 보조사업에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시기가 지연된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7,41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임시청사 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한 동교동신청사 건립비외 26건에 104억4,178만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2.4%에 해당하는 303억6,096만6천원으로 2003년도 집행잔액(불용액)발생비율인 8.8%(188억7,410만1천원)보다는 3.6%(114억8,686만5천원)가 증가되었고, 집행잔액 주요발생 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6억2,464만2천원, 집행사유미발생 9억7,135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137억7,600만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2,016만3천원, 예비비 107억6,880만2천원이 되겠음.

<검토의견>

○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303억6,096만6천원 대비 약 5.4%에 해당하는 16억2,464만2천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와 45.4%에 해당하는 137억7,600만1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약하고 소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이 1억원이상 발생한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2004년도에 석경산구와 상호 방문한 횟수는?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우리구에서 1번 방문했고 석경산구에서 2번 방문 왔음.

○ 질의요지(한수균 위원) : 석경산구에서 방문시 어느 예산을 전용하였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외빈초청 여비에서 전용하였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2003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3.6%증가된 이유는?

○ 답변요지(이은규 행정관리국장) : 예산 편성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향후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국·시비 보조금 중 시기를 놓쳐서 사용하지 사례가 있는가?

○ 답변요지(이은규 행정관리국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예산편성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답변요지(이은규 행정관리국장) : 올해 예산 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감리비 850만원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창전동 청사를 착공하지 못했음.

○ 질의요지(유남철 위원) : 석경산구 방문단에 경제인 1~2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람.

○ 답변요지(이은규 행정관리국장) : 앞으로 경제 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겠음.

○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2004년도 마포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은?

○ 답변요지(장종환 문화체육과장) : 2억3천2백만원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거소불명, 무재산은 철저히 조사해서 결손처리 하기바람.

- 답변요지(박민구 세무1과장) :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음.
-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금년도 재산세를 20% 감면하면 작년 대비해서 얼마정도 수입이 감소되는가?
 - 답변요지(최두열 세무2과장) : 약 70억원정도 감소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과년도 체납 징수시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 답변요지(박민구 세무1과장) :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천 4백만원이 남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경숙 가정복지과장)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3째아이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이 예상보다 적었음.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저소득 주민 보호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바람.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수급자 책정 등을 철저하게 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는 1일 몇 톤 정도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1일 97톤으로 편성하였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민간자본 보조비 1억 5천 8백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조한영 지역경제과장) : 서교시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신수시장으로 대상 사업을 변경함으로 사업비용이 줄었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민간자본 보조비 1억 5천 8백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조한영 지역경제과장) : 서교시장이 사업을 포기하여 신수시장으로 대상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용이 줄었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공원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 답변요지(김재만 공원녹지과장) : 현석동 1-5번지와 18건에 대한 낙찰 차액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도시관리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
- 답변요지(박도식 도시관리과장) : 뉴타운 사업 용역비, 가로 정비 창고 개·보수비 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교통행정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자동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말소시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토목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 답변요지(이상환 토목과장) : 걷고 싶은 거리에 분수 광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국책사업과 관련이 되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고, 작년에 눈이 적게 내려서 제설 작업 비용이 적게 소요되었으며 시설비 부분은 29개 공사 추진에 따른 낙찰 차액임.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영리 공영주차장은 언제 착공할 예정인가?
-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올해 중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영리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액이 증액된 이유는?
-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높아졌음.
-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연남동~망원동 구간 하수관 교체 공사비는 전액 시비인가?
- 답변요지(조병준 치수과장) : 전액 시비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세입과 세출은 적립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토목공사 준공시 감리는 누가 하는가?
- 답변요지(이상환 토목과장) : 시비 지원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고 구비 공사는 100억 미만은 직원이 직접 관리함.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장두봉 소공원 지하차도 건설 비용이 초과 지출된 이유는?
- 답변요지(이상환 토목과장) : 지하차도가 당초보다 13M가 늘었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금년에도 보건소에 불용액이 많을 것 같은가?
- 답변요지(하현성 보건소장) :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용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금년에 독감 예방 접종은 몇 명하였는가?
- 답변요지(강수경 지역보건과장) : 올해는 시작하지 않았고 작년엔 12,000명 정도 접종했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연령에 제한없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예방 접종 인원을 증가 시킬 생각은 없는가?
- 답변요지(강수경 지역보건과장) : 하루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00~1,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접종 시기를 놓칠 수 있음.
- 질의요지(한수균 위원) : 의회사무국 행사지원비가 전액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김재형 의회사무국장) : 2004년도에 의정결산 보고회를 하지 않았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사항 : 없 음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6.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제출내역

- 2004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 자료(결산서에 포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세입 · 세출결산 총괄 설명

■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287,846,456,000원
(전년도 이월금 29,204,905,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806,037,277원이고
지출액은 226,941,807,369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7,864,229,90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807,466,000원
 - 사고이월 12,035,091,74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253,601,4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68,070,683원임.

■ 2004년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244,158,646,000원
(전년도 이월금 24,917,612,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51,948,314,935원이고
지출액은 199,548,423,261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2,399,891,674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3,807,466,000원
- 사고이월 10,441,789,74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227,013,40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23,622,529원임.

■ 200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상황은

- 예산현액 43,687,810,000원
(전년도 이월금 4,287,293,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2,857,722,342원이고
지출액은 27,393,384,108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5,464,338,23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사고이월 1,593,302,000원이고
 - 보조금 집행잔액 26,588,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44,448,154원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90,28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86,869,650원이고
지출액은 79,680,95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7,188,7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보조금 집행잔액 2,893,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5,440원임.

◎ 주차장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43,597,529,000원

(전년도 이월금 4,287,293,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70,852,692원이고

지출액은 27,313,703,158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5,457,149,534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사고이월 1,593,302,0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3,694,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40,152,714원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㉔	세입결산액 ㉕	세출결산액 ㉖	차인잔액 ㉗ = (㉕ - ㉖)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㉘	사고이월 ㉙	보조금사용 잔액 ㉚	순세계잉여금 (㉘ - ㉙ - ㉚ - ㉛)
합 계	287,846,456,000	294,806,037,277	226,941,807,369	67,864,229,908	3,807,466,000	12,035,091,740	3,253,601,485	48,768,070,683
일반회계	244,158,646,000	251,948,314,935	199,548,423,261	52,399,891,674	3,807,466,000	10,441,789,740	3,227,013,405	34,923,622,529
특별회계	43,687,810,000	42,857,722,342	27,393,384,108	15,464,338,234	0	1,593,302,000	26,588,080	13,844,448,154
의료보호 기 금	90,281,000	86,869,650	79,680,950	7,188,700	0	0	2,893,260	4,295,440
주차장	43,597,529,000	42,770,852,692	27,313,703,158	15,457,149,534	0	1,593,302,000	23,694,820	13,840,152,714

세 입 결 산 총 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㉔	징수결정액 ㉕	수 납 액			미수납액 ㉖ = (㉔ - ㉖)	미수납액 처리		비율 (%) ㉖/㉔
			수납총액 ㉗	과 오 납 반환액 ㉘	실제수납액 ㉙ = (㉗ - ㉘)		겉손처분	이월액	
합 계	287,846,456,000	335,030,098,555	296,098,135,777	1,292,098,500	294,806,037,277	40,224,061,278	1,784,690,220	38,439,371,058	102.4
일반회계	244,158,646,000	273,342,761,195	253,233,367,095	1,285,052,160	251,948,314,935	21,394,446,260	1,431,310,220	19,963,136,040	103.2
특별회계	43,687,810,000	61,687,337,360	42,864,768,682	7,046,340	42,857,722,342	18,829,615,018	353,380,000	18,476,235,018	98.1
의료보호 기 금	90,281,000	237,457,310	86,869,650	0	86,869,650	150,587,660	0	150,587,660	96.2
주차장	43,597,529,000	61,449,880,050	42,777,899,032	7,046,340	42,770,852,692	18,679,027,358	353,380,000	18,325,647,358	98.1

세 출 결 산 총 관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액 ㉔	예산성립후 증 감 액 ㉕	예산현액 ㉖ = (㉔ + ㉕)	지출원인 행위액 ㉗	지 출 액 ㉘	다음연도 이월액 ㉙	집행잔액 (㉖ - ㉘ - ㉙)
합 계	258,641,551,000	29,204,905,000	287,846,456,000	242,637,851,109	226,941,807,369	15,842,557,740	45,062,090,891
일반회계	219,241,034,000	24,917,612,000	244,158,646,000	213,651,165,001	199,548,423,261	14,249,255,740	30,360,966,999
특별회계	39,400,517,000	4,287,293,000	43,687,810,000	28,986,686,108	27,393,384,108	1,593,302,000	14,701,123,892
의료보호 기 금	90,281,000	0	90,281,000	79,680,950	79,680,950	0	10,600,050
주차장	39,310,236,000	4,287,293,000	43,597,529,000	28,907,005,158	27,313,703,158	1,593,302,000	14,690,523,842